

확인 불가 통지서

※ 뒤쪽의 확인통지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대상사업주	사업장명	전화번호
	성명	주민등록번호
	소재지	

<확인 불가사항 및 그 이유>

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직인

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

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안내사항

※ 통지서를 보는 법

확인불가 통지서는 귀하가 제출하신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필요한 확인사항 중 “확인 불가사항 및 그 사유”에 적힌 사유로 인하여 해당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.

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통지서상의 확인 불가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하신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※ 참고사항

통지서에 적힌 확인불가 사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확인불가 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아래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※ 유의사항

통지서에 적힌 대상 사업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<해당 관서의 전화번호>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 노동기준조사과 ☎(0000) 000-0000